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14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6가단40162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백미라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정경훈
변 론 종 결	2026. 8. 14.
판 결 선 고	2026. 9.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14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C일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저작권을 등록한 온라인 게임 'D'(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고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는 'E'라는 명칭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2025. 10. 12.부터 2026. 2. 2.까지 원고가 허가나 승인하지 아니한 사설서버를 개설한 후 이 사건 게임을 복제, 공중송신하는 불법서버인 'F'(이하 '이 사건 불법서버'라 한다)에서 하는 게임을 송출하고 이 사건 불법서버를 비롯하여 이 사건 게임을 복제, 공중송신하는 불법서버인 'G', 'H', 'I'를 홍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불법서버를 홍보한 대가로 서버 운영진으로부터는 홍보수수료를 지급받고, 유튜브 채널 시청자들로부터는 방송 후원금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25. 10. 12.부터 2026. 2. 2.까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 사건 게임을 모방한 사설게임을 제공하는 이 사건 불법서버 등을 광고하는 영상을 공중송신함으로써 이 사건 불법서버 등의 각 불법서버 운영자가 원고의 이 사건 게임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조하였고, 위 행위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불법서버 등의 각 불법서버 운영자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 민법 제760조 제1, 3항에 따라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14

나. 구체적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제1항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25. 10. 12.부터 2026. 2. 2.까지 유튜브 운영을 통해 이 사건 불법서버 등 다수의 불법서버를 홍보함으로써 이 사건 불법서버 운영자 등 불법서버 운영자의 이 사건 게임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 침해를 보다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불법서버 운영자 등 불법서버 운영자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저작권법에 따라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은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 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J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의 영상 게재 기간 및 불법서버 운영자로 추정되는 자의 피고 명의 계좌 입금 횟수로부터 추정되는 피고의 영상 게재 횟수, 이 사건 게임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 침해의 태양 및 정도, 원고가 피고로 인하여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의 대략적인 규모, 원고의 이 사건 손해 범위에 대한 주장·입증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범위에 대한 아무런 반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0-14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방조행위로 인한 수익이 원고가 청구하는 5,0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액을 5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6.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영